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1.8.)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병준]

목 차

1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2	『거창군 현수막 지정계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3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	19
4	거창한후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6
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 보고	32
6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공모 신청 보고	35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2.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2. 26.

2. 제안이유

- 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방문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지전문 인력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2026년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 운영
- 나. 위치 : 항노화 힐링랜드 일원(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
- 다. 사업비 : 90,000천원(국 45,000 도 13,500 군 31,500)
 - 1) 산림치유 : 60,000천원(국 30,000 도 9,000 군 21,000)
 - 2) 숲해설 : 30,000천원(국 15,000 도 4,500 군 10,500)
- 라. 사업량 : 3명(산림치유지도사 2명, 숲해설사 1명)

마. 시설현황

- 1) 자연휴양림 : Y자형 출렁다리, 무장애 탐방로,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 2) 치유의 숲 : 산림치유센터, 무장애데크로드, 숲체험장, 명상숲길 등

바. 위탁대상 사무 : 산림서비스(산림치유·숲해설) 프로그램 기획·운영

- 1) 산림서비스 신규개발 및 홍보물 제작
- 2) 전 연령층 대상 맞춤형 산림프로그램 제공
- 3)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피드백) 및 결과를 통한 효과 분석

사. 위탁기간 : 2026. 3. ~ 11.(예산범위내) ※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

아. 향후계획

- 1) 2026. 1월초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 2026. 1월중 : 사업계획 수립(사업규모 및 과업목표 설정)
- 3) 2026. 2월중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4) 2026. 2월말 : 위·수탁 협약체결

4.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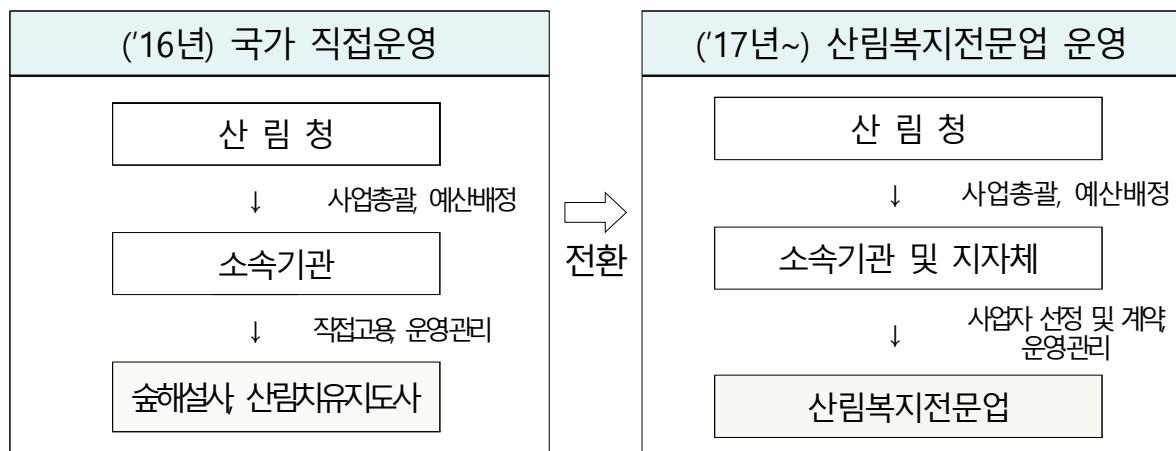
가. 2025년 산림치유 및 숲해설 민간위탁 운영실적

- 1) 운영기간 : 2025. 3. 15. ~ 11. 15.
- 2) 장 소 : 항노화힐링랜드 일원
- 산림치유센터,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무장애데크로드, 명상장 등
- 3) 대 상 : 유아에서 노인까지 전 연령층
- 4) 인 원 : 1회 20명이내
- 5) 위탁기관 : 좋은숲(대표 신승호)
- 6) 운영방법 : 각 프로그램별 산림치유지도사(2명)·숲해설사(1명) 자율 진행

- 7) 참여인원 : 총 4,139명(산림치유 2,177명, 숲해설 1,962명)
- 8) 신청방법 : 힐링랜드 홈페이지 및 전화 예약 등
- 9) 체 험 료 : 산림치유 어른 1만원, 청소년 5천원 / 숲해설 무료
- 10) 프로그램 :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 산림치유 : 주 6일, 일 2회(09:30~12:00, 13:30~16:00)
 - 숲 해 설 : 주 5일, 일 3회(10:00~11:00, 13:00~14:00, 15:00~16:00)
- ※ 계절별 힐링랜드 현장에 맞추어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운영
- 11) 세외수입 : 금13,899천원(산림치유프로그램)
 ※ 숲해설 무료

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분야의 참여 확대 및 활성화 도모

<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 >



다. 관계법령 : 붙임

- 1)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및 제20조(지원)
-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 5)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 6)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7)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항노화힐링랜드의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을 산림복지전문 인력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산림복지 시설을 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산림복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치유의 숲 및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를 일정 인원 이상 배치하여야 할 법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아울러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9조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산림치유지도사 활용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은 법령 이행 성격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재원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군비 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일부에 해당하여 재정적 부담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개시일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본 안건은 2026년 3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예정하고 있으나, 의회 동의 요청 시점이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 개시 60일 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제출되었음.
-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확정 시기가 연말에 이루어진 점, 이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세부 운영계획 확정이 지연된 점, 전년도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반영을 위한 내부 검토 기간이 소요된 점 등의 사정으로 의회 동의 요청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임.

- 본 안건이 조례에서 명시한 60일 전 동의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의회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통제 기능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기간을 지켜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안건은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시기가 지연된 사유를 지적하되, 사업의 공익성과 법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운영계획 수립)

치유의 숲시설의 운영 · 관리자(이하 “운영 ·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의 숲의 일반현황
2. 치유의 숲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
4. 산림치유지도사 배치계획

제9조(프로그램 운영)

- ① 운영 · 관리자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은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다.
- ③ 운영 ·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계획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2.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2. 26.

2. 제안이유

-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계약이 2026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위·수탁 절차를 이행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게시 신고 접수대행
- 나. 위탁업무
 - 1) 현수막 게시 신고서 접수 및 검인 날인, 수수료 접수
 - 2) 현수막 설치·철거 대행
 - 3) 게시대의 경미한 보수 및 유지관리

4) 재난·재해에 따른 안전조치 및 장비·인력 지원
다. 위탁기간 : 3년(2026. 4. 1. ~ 2029. 3. 31.)

※ 현수막 지정계시대 현황

구분	계	거창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
개수	108	47	4	3	4	6	7	5	9	6	5	9	3
면수	532	235	20	15	20	30	35	25	45	30	25	37	15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마. 소요예산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3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2)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6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군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계약이 2026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현수막 지정계시대는 불법 광고물 발생 억제, 도시미관 개선, 군민의 공정한 이용 보장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시설로서, 상시적인 관리와 신속한 민원 대응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사무는 행정처분이나 권리 제한을 수반하지 않는 관리·대행 사무이며 전문 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시설 유지·관리 업무로서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에서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서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광고물 관리 및 안전점검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함.
- 수탁자 자격기준 또한 관련 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단체 여부, 장비·인력·사무실 보유, 보험가입 능력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현수막 지정계시대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직영 방식으로 운영 중임, 거창군은 기존에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며, 타 시·군의 운영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위탁 범위, 비용 구조, 계시기간 등에서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며, 위탁 근거, 위탁 범위, 수탁자 선정 절차 등이 법적·제도적으로 타당하게 마련되어 있고 타 시·군 운영 사례 및 기존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수막 지정계시대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적정한 방식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 기구 · 시설 · 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

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2.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2. 26.

2. 제안이유

- 가. 지애플(G-APPLE) 기존 위탁업체 재계약 포기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안정성 유지, 예산 절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신규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현황
 - 1) 시설명 : 지애플(G-APPLE)
 - 2) 시설위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72, 푸드종합센터 옆

3) 시설규모 : 1,372.12m²(지상 2층 999.12m², 반려견놀이터 373m²)

구 분	면적(m ²)	용 도	비 고
합 계	1,372.12	-	철골구조
지애플	1층	535.13	사과제품전시장, 휴식공간, 사무실 등
	2층	463.99	휴식, 체험, 교육 공간 및 옥외휴식공간 등
반려견놀이터	373.00	반려견 동반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공간	야외공간
조경 및 사과나무 관리	사과나무 151주 등	지애플 주변 조경 및 사과나무 관리(병해충·잡초 관리 등)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사무 : 지애플(G-APPLE)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전반
 - 지애플 시설 관리·운영(건물 내·외부 시설 및 기계·장비 등)
 - 지애플 사무 관리·운영(제품 판매 및 체험, 교육, 행사 등)
 - 그 밖에 지애플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 등
- 2) 위탁기간 : 2026. 3. 1. ~ 2028. 12. 31.(2년 10개월)
- 3) 위탁예산 : 없음
- 4)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선정
- 5)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전문성, 유사시설 경력, 운영 능력 등 전반 고려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거창군 소재 법인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다. 그간 추진현황

- 1) 2022. 10. : 지애플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
- 2) 2023. 1. ~ 8. : 위탁운영 실시(농업회사법인 엉클팜)
- 3) 2023. 8. ~ 9. : 위탁중단에 따른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
- 4) 2023. 10. ~ 현재 : 위탁운영 실시(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
- 5) 2024. 2.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전환

- 6) 2024. 7. : 식사류 신메뉴 개발(사과비빔밥, 사과돈가스, 사과국수)
- 7) 2025. 8. 6. : 재계약 적정성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함 원안 가결 / 평가점수 : 84.6점(정량 25점+정성 59.6점)
- 8) 2025. 9. :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군의회 동의 요구 ⇒ 원안 가결
- 9) 2025. 12. 11. : 기존위탁업체 민간위탁 재계약 포기서 접수

라. 향후계획

- 1) 2026. 1. : 민간위탁 공고
- 2) 2026. 2.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 3) 2026. 2. : 위·수탁 계약체결 및 인계·인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시지애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의결되었으나 지난 12월 11일 해당 수탁기관이 재계약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신규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본 시설은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의 핵심 거점시설로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및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사항으로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포기에 따라 2026년

부터는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공개모집 공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협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일정상 2026년 1월부터
즉시 위탁 운영을 개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특히, 연초 시설 운영 공백 발생 시 방문객 민원 증가,
시설 관리 소홀, 기존 예약·프로그램 취소 등 행정 신뢰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협의 결과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현 업체가 시설 운영을 계속
하기로 합의 됨.
- 이는 신규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완료 시까지의 과도기적·
임시 운영 조치로, 민간위탁의 장기 연장이나 사실상의
재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였으므로 2026년 이후 민간위탁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2026년 2월까지의 운영은 재계약에
따른 위탁이 아닌 임시적 관리·운영 조치로 봐야 할 것으로
문제가 없다 할 것임
- 본 사무는 시설 관리·운영 및 판매·체험 등 서비스 제공
사무로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며 또한 「거창군 거창
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의 법적 근거는 명확함.

- 신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으로 이는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판단됨.
- 본 안건은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포기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신규 민간위탁이 필요하게 된 사안으로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행정적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군의회 동의)

-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위탁)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복합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2.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2. 26.

2. 제안이유

- 가.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지속하고, 휴게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거창군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 확대 효과를 유지·강화하기 위함
-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 나. 위치 : 가조면 가조가야로 1523(거창한휴게소 광주방향
사과전망대 1층)
- 다. 규모 및 장비현황

구 분	면 적(m ²)	장비현황	비 고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대 1식 - 진열대 1식 - 쇼케이스 1식 - 저장창고 1식 - 냉난방공조시설 및 POS시스템 	철골구조

라. 수 탁 자 : 거창농특산물협동조합(대표 이장호)

마. 위탁기간 : 2023. 4. 2. ~ 2026. 4. 3.(3년간)

※ 재계약 기간 : 2026. 4. 4. ~ 2029. 4. 5.(3년간)

3. 위탁사무 범위 : 시설운영 및 사무운영 전반

가.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관리 운영(건물 및 장비 등)

나. 그 밖에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위한 사항 전반

4. 운영현황

가. 취급품목 : 사과, 사과즙, 잡곡 등 20개 종류 이상

나. 매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탁자	(사)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							거창농특산물협동조합	
매출액	40,555	67,222	92,667	68,998	78,420	102,044	275,523	443,072	465,565

5. 그간 추진사항

가. 2025. 11. 19. : 민간위탁사무 자체평가 실시

나. 2025. 12. 4.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추진

– 평가점수 : 90.8점(정량평가 28점 + 정성평가 62.8점)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함 원안 가결

6. 향후 추진일정

- 가. 2026. 1. : 민간위탁 재계약 군의회 동의 요구
- 나. 2026. 2. ~ 3. : 계약절차 진행
- 다. 2026. 4. ~ : 위탁업무 개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4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거창농특산물협동조합에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반 소매시설과 달리 유동 인구가 많고 지역 대표 농산물 홍보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공간으로, 단순 임대 개념이 아닌 정책적 목적을 가진 관리·운영 방식이 요구된다 할 것임.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본 사무는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및 장비 관리,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진열·운영, 휴게소 이용객 대상 홍보 기능 수행 등으로 구성된 시설 관리·운영 사무로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함.

- 거창군농특산물협동조합은 경상남도 거창군을 기반으로 하는 농특산물 유통·판매 전문 협동조합으로 지역 농산물의 품질 관리, 유통, 판매 및 홍보 마케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지역 농산물의 특성과 생산 구조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농가와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은 외부 전문업체에 비해 지역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으로 평가된다 할 것임.
- 현 수탁기관의 운영기간 동안 매출 실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과 농특산물 유통·판매 전문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90.8점)으로 의결되었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재계약은 가능하며, 위탁기간 또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
- 따라서 기존 운영 성과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종합할 때, 재계약을 통해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공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 가결함이 적정하다 할 것임.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의회 동의)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 (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제9조(협약체결 등)

-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 보고

검토 보고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2. 26.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2. 26.

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 공모이유

- 가. 생활·안전·위생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개발사업 추진 필요
- 나. 취약도가 높으며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마을을 공모 지원하여 주민들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공모개요

- 가. 사업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나. 사업기간 : 2027. ~ 2030. (4년간)
- 다. 공모대상 : 남하면 안흥마을, 가북면 봉석마을
- 라. 사업비 : 개소별 20억원 내외(국비 최대 15억원, 도비 9%, 군비 21%)
 - 공모(최대) : 4,286백만원 【국비 3,000(70%), 도비 386(9%), 군비 900(21%)】

마. 사업내용 : 생활·안전·위생 인프라 구축, 주택정비, 환경개선 등

3. 대상지 현황

가. 남하면 안흥마을

- 1) 마을 소하천변 산지 침식으로 산사태 위함이 증가하고 있음
- 2) 마을만길이 협소하여 응급차량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나. 가북면 몽석마을

- 1) 마을상수도 시설이 없어 개별 주택 관정으로 식수 해결 중
- 2) 3개 자연마을에 CCTV 1대만 있어 보안에 취약

다. 공통사항

- 1) 광역(소규모) 상·하수도 미보급으로 생활, 위생 여건 취약
- 2) 대부분 노후주택으로 정주여건 취약
- 3) 방치되는 빈집, 노후 담장으로 인하여 안전, 경관 취약
- 4) 재래식 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악취, 벌레 등 위생 여건 취약

4. 추진계획

가. 2026. 1. : 신규공모 예비계획 수립 착수

나. 2026. 3. : 경남도 현장컨설팅-대면평가, 신규공모 예비계획 제출

다. 2026. 5.~6. : 지방시대위원회 서면 및 대면평가

라. 2026. 6. : 최종 선정결과 발표

마. 2027. 1. : 1년차 사업비 교부(총사업비 10%)

5. 기대효과

가. 취약한 정주여건과 안전·위생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지역 정주 만족도 향상

나. 우리군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생활·안전·위생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공모사업은 군이 직접 신청하고 군비가 투입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모 신청 전에 사업 개요와 사전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함.
-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관련 법령 및 타 조례와의 상충이 없고 농촌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며, 대상지의 취약성이 명확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됨.
- 국·도비 비중이 높은 재원 구조로 재정 효율성이 비교적 양호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공모 신청을 추진함이 타당함.
- 다만, 본 안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이므로 공모 선정 여부 및 연차별 군비 부담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음.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공모 신청 보고

검 토 보 고 서

가. 제출일자 : 2025. 12. 26.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5. 12. 26.

2.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1. 공모이유

가.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고제면 사과골 주민어울림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맞춤형 서비스 공급 필요

나. 거점시설 접근이 어려운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필요

2. 공모개요

가. 사업명 : 일반농산어촌개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나. 사업기간 : 2027. ~ 2031. (5년간)

다. 공모대상 : 고제면

라. 사업비 : 최대 20억원(국비 70%, 도비 9%, 군비 21%)

- 공모(안) : 2,000백만원 【국비 1,400, 도비 180, 군비 420】

마. 사업내용

1) 거점시설 : 운영활성화 역량강화 및 거점시설 활용 프로그램

2) 배후마을 : 주민수요 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4. 추진계획

- 가. 2026. 1. : 신규공모 예비계획 수립 착수
- 나. 2026. 5. : 농식품부 서면 및 대면평가
- 라. 2026. 6.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마. 2027. 1. : 1년차 사업비 교부(총사업비 10%)

5. 기대효과

- 고제면 거점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및 주민만족도 증대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고제면 사과골 주민어울림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거점시설 접근이 어려운 배후마을까지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공모사업은 군이 직접 신청하고 군비가 투입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모 신청 전에 사업 개요 및 제5조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임.
- 기존 시설은 조성 이후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일부 배후마을은 접근성 한계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어, 본 사업은 시설 유지·관리 수준을 넘어 거점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배후마을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전 검토 항목에 따라 살펴볼 때, 본 사업은 관련 법령 및 타 조례와의 상충이 없고, 기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계한 2단계 사업으로 정책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주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은 사업 특성상 주민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임.
- 또한 국·도비 비중이 높아 재정 효율성은 비교적 양호하나, 5년간 장기 사업인 만큼 연차별 군비 확보와 운영비 부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와 배후마을 서비스 확산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등 사전 검토 항목에 따른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본 안건은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며 보고사항에 해당하므로, 향후 공모 선정 여부 및 연차별 군비 부담 규모,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편성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